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1. 2. 3
- 다. 상 정 일 자 : 2001. 2. 3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 2000년 지방세법령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3 1월일 또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순군세조례를 사전에 정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시행하는데 차이 없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현재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조정 (화순군세조례 제11조제2항)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농지임대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관계조항을 법령에 맞추어 정비(화순군세조례 제40조 내지 제50조)
-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 세율 인상조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율을 5%로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연수 만큼 차등과세(화순군세조례 제36조제1항제1의2호)
  -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 세율을 교통

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화순군세조례 제39조의1)

- 담배 소비세의 세율 인상 조정
  - 제1종 궤련에 대한 세율을 담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화순군세조례 제54조제1항제1호가목)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화순군세조례 부칙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화순군세 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조치하고 담배 소비세율도 1갑당 50원을 인상조치하는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항을 개정조치 하였음.
- 따라서 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걸맞게 군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300,000원”을 “500,0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중 “농지세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30일“을 ”1월“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한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 \times (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  $2 \leq n \leq 12$  )

제37조제1항중 “분할하여”를 “ 분할한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로 하고, “4분의 1의금액”을 “4분의 1 금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하며,

제39조의2중 “1000분의32”를 “1000분의 115”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196조의17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자본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2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3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3조(과세기간)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과세표준)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46조의 제목 “농지의 변동신고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4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하여 제2항으로 한다.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신고와 납부)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의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63조(과세표준및세율) ①도축세의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군수가 결정한다”로 한다.

제71조 제2항 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측레)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007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제3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 제1항 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 이 있는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 <p>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p>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p>   | <p>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분업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p>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p>   | <p>③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p>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p>   | <p>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p>제4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 <p>제4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p> <p>- - - - -농업소득세</p> <p>- - - - -</p> <p>- - - - -</p> <p>- - - - -</p> <p>- - <u>농업소득금액</u> - - - - -</p> <p>- - - - -</p>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2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42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br/> <u>농업소득세</u> -----<br/> -----<br/> -----<br/> -----<br/> -----<br/> -----<br/> -----<br/> -----<br/> -----</p>  |
| <p>제43조 (과세기간) ① 농지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br/>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br/>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p>                      | <p>제43조 (과세기간) ① <u>농업소득세</u>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br/>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u>농업소득</u>에 대하여 <u>농업소득세</u>를 부과한다.<br/>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u>농업소득</u>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u>농업소득</u>에 대하여 <u>농업소득세</u>를 부과한다.</p> |
| <p>제44조 (과세표준) 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 <p>제44조 (과세표준) ① <u>농업소득세</u>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p>  |

### 신 · 구 조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바에 의한다.</p>  |
|  |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바에 의한다.</p>   |
| <p>제45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산출세액”이라한다) 으로 한다. ( 생략 )</p>  | <p>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
| <p>제46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p> | <p>제4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현행과 같음 )</p> <p>제46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p> <p>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p> <p>4.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② 농업소득세 - - - - -</p> <p>- - - - -</p> <p>- - - - -</p> <p>- - - - -</p> <p>농업소득세 - - - - -</p> <p>- - - - - - 농업소득세 - -</p> <p>- - - - -</p> |
| <p>제47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 <p>(삭제)</p>  |
| <p>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p> <p>2. 제2기분 : 8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p>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p>  |  |
| <p>1. 제1기분: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p> <p>2. 제2기분:12월1일부터112월31일까지</p>   |  |
| <p>제48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 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 <p>제48조(수시부과) - - - - - 농업<br/>소득세 - - - - -</p> <p>- - - - -</p>                             |
| <p>제49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p>  | <p>제49조(신고와 납부)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 기간중의 농업 소득</p>   |

### 신 · 구조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야 한다. 다만, 법 제213보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10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1.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p> <p>2.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액</p> <p>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액</p>   |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p>   |
| <p>제50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p> <p>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지조사위원회는 진도군내의 농지소유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지조사위원회는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 <p>제50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p> <p>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의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 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p> |
| <p>제54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제조담배</p>  | <p>제54조 (세율) ① - - - - -</p> <p>- - - - -</p> <p>1. - - - - -</p>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가. 제1종 꺾릴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꺾릴은 20개비당 40원</p>   | <p>가. - - - - - 510원 -<br/>- - - - -<br/>- - - - -</p>   |
| <p>② ( 생 략 )<br/>제63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2월 1일과 7월2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u>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u></p>  | <p>② ( 현행과 같음 )<br/>제63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 - - - -<br/>- - - - -<br/>- - - - -<br/>- - - - - <u>군수가 결정한다.</u></p>  |
| <p>제71조 (납세의무자)① ( 생 략 )<br/>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p>  | <p>제71조 (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br/>②- - - - -<br/>- - - - -<br/>- - - - -</p>   |
| <p>1 ~ 5 ( 생 략 )<br/>6. <u>토지구획정리사업</u>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u>도시계획법</u>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p> | <p>1~ 5 ( 현행과 같음 )<br/>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u> - - - - -<br/>- - - - -<br/>- - - - -<br/>- - - - -<br/>- - - - -</p>                           |
| <p>③ ( 생 략 )<br/>제72조 ( 과세표준) ① ( 생 략 )<br/>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 <p>③ ( 현행과 같음 )<br/>제72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br/>② - - - - -<br/>- - - - -<br/>- - - - - <u>별도 합산 또는 분리관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u> - - - - -</p>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br/>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br/>1 ~ 6 ( 생 략 )<br/>③ . ④ ( 생 략 )</p> | <p>-----<br/>-----<br/>1 ~ 6 ( 현행과 같음 )<br/>③ . ④ ( 현행과 같음 )</p> |